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831

발의연월일: 2024. 8. 14.

발 의 자:윤건영·박지원·이기헌

전현희 • 한병도 • 이해민

백승아 · 염태영 · 김병기

이정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,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보도되어,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, 도시공원 및 녹지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6조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

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6호까지"를 "제5호까지, 제6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에"를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"로 한다.

② 제49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	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		
행위)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	행위) ①		
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			
하여서는 아니 된다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<u>5의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</u>		
	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		
	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		
	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		
	<u>위</u>		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
제56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5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② 제49조제1항제5호의2에 해		
	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		
	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	
	부과한다.		
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<u>제6</u>	<u>③</u> <u>제5</u>		
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	호까지, 제6호		
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			
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			
료를 부과한다.			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		

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특별시장・광역시장	
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	
사・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・	
징수한다.	<u>.</u>